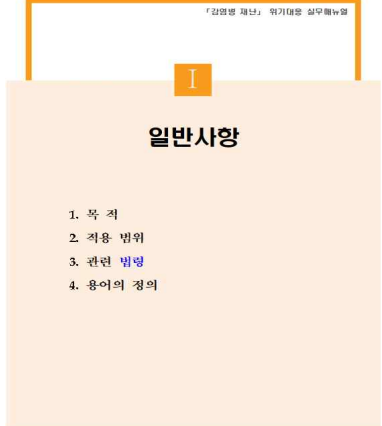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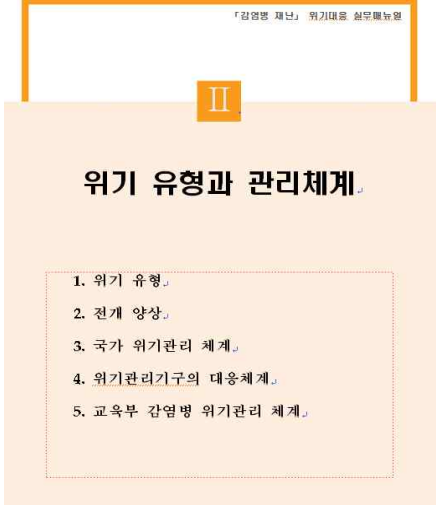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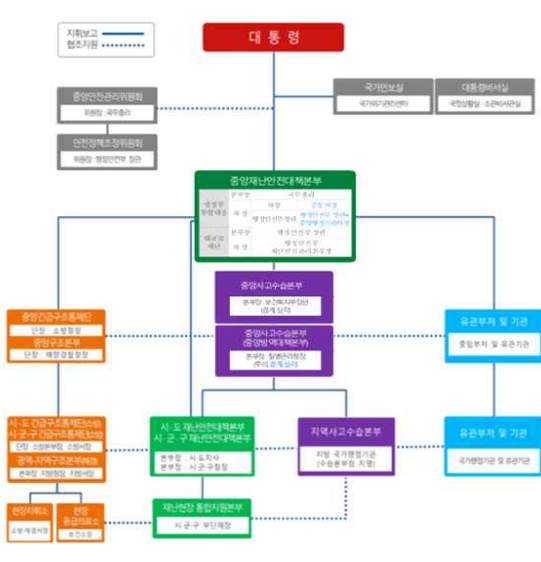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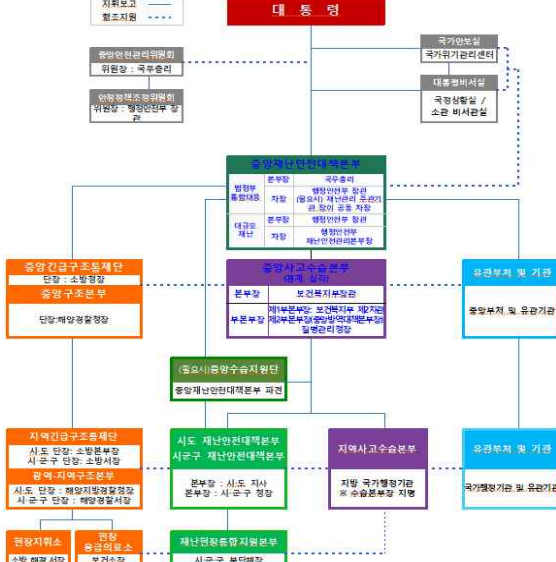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
	<p>□ 이 매뉴얼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4조의5, 「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」(대통령훈령 제454호) 및 「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」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보고·전파, 상황 분석·평가·판단,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·기준·요령과 각종 양식, 보도자료 또는 대화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</p> <p>□ 관련 부처·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「감염병」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「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을 작성하여야 함.</p> <p>○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.</p> <p>○ 다만,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,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.</p> <p>○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,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.</p>	<p>□ 이 매뉴얼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4조의5, 「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」(대통령훈령 제454호) 및 「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」에 따라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매뉴얼 적용 기본원칙</p> <p>○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.</p> <p>○ 다만, 감염병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감염병의 종류, 때와 장소,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.</p> <p>○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,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.</p>	<p>○ 문구수정</p>																		
<p>목차 다음</p>	<p>[매뉴얼 제·개정 현황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승인 일자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주요 개정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개정 근거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담당부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이하생략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승인 일자	주요 개정 내용	개정 근거	담당부서	이하생략				<p>[제·개정 이력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일자 (승인)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주요 개정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개정사유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담당부서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협의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이하생략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일자 (승인)	주요 개정 내용	개정사유	담당부서	협의기관	이하생략					<p>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'협의기관' 란 추가</p>
승인 일자	주요 개정 내용	개정 근거	담당부서																		
이하생략																					
일자 (승인)	주요 개정 내용	개정사유	담당부서	협의기관																	
이하생략																					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 . 일반사항</p>		<p>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간지 양식 변경</p>
<p>1</p>	<p>1. 목적 이 매뉴얼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공중보건위기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대한 법정부적 위기관리(예방-대비-대응-복구) 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한 것임</p>	<p>1. 목적 ~~~~~ ~~~~~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·재산 피해(이하 “감염병 재난”이라 함)에 대해 법정부적 위기관리(예방-대비-대응-복구) 체계와 교육부(교육기관 등)의 임무 및 역할 등을 규정함</p>	<p>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문구 수정</p>
<p>1</p>	<p>2. 적용범위 가. 상황범위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다음의 상황에 적용 (1) 해외 신종감염병이 공항·항만 등을 통해 국내 유입, 확산되는 경우</p>	<p>2. 적용범위 가. 감염병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모든 교육기관의 활동에 적용하며 교육부가 대응·수습의 주관부처 역할 수행 (1)~(3) 삭제</p>	<p>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표준매뉴얼을 반영한 교육부 실무 매뉴얼 수준으로 문구 수정</p>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	<p>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,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,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,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(AI), 신종인플루엔자, 바이러스성 출혈열, 신종감염병증후군 등</p> <p>-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</p> <p>(2) 국내에서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이 발생 및 확산되어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</p> <p>(3) 기타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 <p>* 국내 상시발생 감염병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대규모로 유행하여 전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다고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에서 판단한 경우 등</p> <p>나. 기관범위 : 감염병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교육기관의 활동에 적용하여 교육부가 대응·수습 주관부처 역할 수행</p>	<p>나. 풍수해, 지진 재해, 산불 재난 등 다른 유형의 재난이 원인이 되어 감염병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매뉴얼을 적용</p>	
1	<p>3. 관련 법규</p> <p>가. 근거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법률 18685호) 제34조의5,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(대통령령 제454호)</p>	<p>3. 관련 법규</p> <p>가. 근거 법령</p> <p>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</p> <p>2) 「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」(대통령령 제454호)</p> <p>3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관련 법률</p>	<p>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</p> <p>- 양식 변경</p>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2	<p>나. 관련법령</p> <p>(1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p> <p>(2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p> <p>(3) 보건 의료기본법</p> <p>(4) 검역법</p> <p>(5) 의료법</p> <p>(6)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</p> <p>< 신설 ></p>	<p>나. 관련 법령</p> <p>< 삭제 ></p> <p>1) 「보건 의료기본법」 관련 법률</p> <p>2) 「검역법」 관련 법률</p> <p>3) 「의료법」 관련 법률</p> <p>4)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</p> <p>5) 그 밖에 감염병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과 관련된 법령</p>	<p>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</p> <p>- '근거 법령과' 관련 법령 중복된 법령 삭제</p> <p>- '관련 법률'까지 포함</p> <p>- 그 밖에 관련된 법령까지 포함</p>
3	<p>라. 관련 규정 및 지침</p> <p>(1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대응지침</p> <p>(2)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대응지침</p> <p>(3)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 대응지침</p> <p>(4)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(AI) 대응지침</p> <p>(5) 인플루엔자 대유행(PI) 대비·대응 계획</p> <p>(6) 바이러스성출혈열* 대응지침</p> <p>* 에볼라바이러스병, 마버그열, 라싸열, 크리미안콩고출혈열, 남아메리카출혈열, 리프트밸리열</p> <p>(7)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 관리 가이드라인</p> <p>(8)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지침</p> <p>(9) 학생 감염병 예방·위기 대응 매뉴얼 (교육부)</p> <p>(10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(행정안전부)</p> <p>(11)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(행정안전부)</p> <p>(12)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(복지부)</p> <p>(13) 기타 각종 감염병 대응 지침 및 매뉴얼 ※부록 지침 목록 참조</p>	<p>라. 관련 지침 등</p> <p>1) ~~~~~~</p> <p>2)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·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 대응지침</p> <p>3)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(AI) 대응지침</p> <p>4) 인플루엔자 대유행(PI) 대비·대응 계획</p> <p>5) 바이러스성출혈열* 대응지침</p> <p>* 에볼라바이러스병, 마버그열, 라싸열, 크리미안콩고출혈열, 남아메리카출혈열, 리프트밸리열</p> <p>6)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 관리 가이드라인</p> <p>7)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지침</p> <p>8) 학교 감염병 예방·위기 대응 매뉴얼 (교육부)</p> <p>9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(행정안전부)</p> <p>10)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(행정안전부)</p> <p>11)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(복지부)</p> <p>12) 기타 각종 감염병 대응 지침 및 매뉴얼 (삭제)</p>	<p>○ MERS, SARS 대응지침 통합에 따른 반영</p> <p>○ 교육부 소관 지침명 현행화</p> <p>○ 개정전 지침 부록 내 '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침 삭제에 따라' ※부록 지침 목록 참조 문구 삭제</p>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						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간지 양식 변경 									
7	<p>1. 위기유형</p> <p>가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</p> <p>나. 국내 원인불명.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</p> <p>다. 기타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	<p>1. 위기유형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15 741 1273 943"> <thead> <tr> <th>원인</th> <th>형태</th> <th>관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감염병</td> <td>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국내 원인불명.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</td> <td>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</td> </tr> <tr> <td>기타</td> <td>그 밖에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상황판단회의(자체 위기평가회의)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원인	형태	관계기관	감염병	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국내 원인불명.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	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	기타	그 밖에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상황판단회의(자체 위기평가회의)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양식 변경
원인	형태	관계기관										
감염병	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국내 원인불명.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	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										
기타	그 밖에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상황판단회의(자체 위기평가회의)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-	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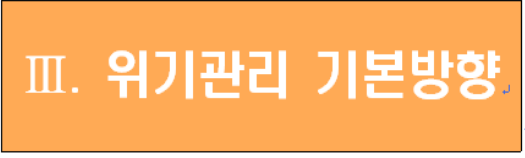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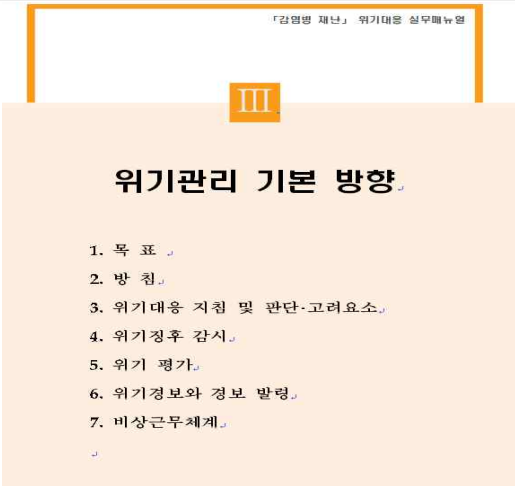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8	<p>3. 위기관리 체계</p> <p>가. 종합체계도</p> 	<p>3. 국가 위기관리 체계</p> <p>가. 종합체계도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동 차장제 반영 -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 변경(「재난안전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반영)
9	<p>나.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</p> <p>중앙안전관리위원회 (국무총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·심의 ○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○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·안전관리업무 협의·조정 	<p>나.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</p> <p>중앙재난관리위원회 (위원장: 국무총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·심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임무와 역할 변경

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9	<p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(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규모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 ○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 정보 종합·관리 ○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·건의 ○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○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 ○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염병 안전취약계층(장애인 등 거동불편자, 노인·어린이, 외국인 등)에 대한 계획 포함 ○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, 소속 직원의 파견,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	<p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(본부장: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) ※약칭: 중대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규모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 ·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, 소속 직원의 파견,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·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(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) ·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·관리 ·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·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· 상황판단회의(사태위기관리회의)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· 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 · 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·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·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 (중대본 미 구성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파견) ·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, 지원 및 총괄·조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임무와 역할 변경
9	<p>중앙사고수습본부 (중앙방역대책본부) (질병관리청장) 주위, 경제, 식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염병 방역조치 총괄 ○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○ 종합상황실 운영 ○ 유관기관 협조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○ 감염병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 보고 ○ 상황판단회의(사태위기관리회의) 및 전문위원회 등 운영 ○ 대응지침 개발·관리 총괄 ○ 감염병 발생 시 중앙역학조사반 현장 대응 ○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○ 입국자 관리 및 진단검사체계 총괄 ○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총괄, 조정 및 지시 ○ 역학조사 수행 및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총괄 ○ 방역물자 지원 및 관리 및 지원 ○ 감염병 위기 정보 수집·전파·공개 ○ 대국민 위기 소통 및 언론 대응 ○ 중앙·지역 정보공유체계 유지 	<p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(본부장: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) ※약칭: 중대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규모 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 ·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, 소속 직원의 파견,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·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(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) ·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·관리 ·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·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· 상황판단회의(사태위기관리회의)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· 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 · 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·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·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 (중대본 미 구성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파견) ·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, 지원 및 총괄·조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 변경(「재난안전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반영)
10	<p>중앙수습지원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, 권고 또는 조언 ○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, 재난발생의 원인, 행정적·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	<p>중앙수습지원단 (행정안전부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대책본부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 권고 또는 조언 ·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, 재난 발생의 원인, 행정적·재정적 조치사항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중앙수습지원단 임무와 역할 변경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10	<p>< 신설 ></p>	<p>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(본부장: 부단체장) ※ 약칭: 통지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·운영 ·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<p>지역사고수습본부 (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명) ※약칭: 지수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 · 재난현장의 대응 및 수습 지원 <p>중앙긴급구조통제단 (소방청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,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담당 <p>지역긴급구조통제단 (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,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·통제를 담당 <p>중앙구조본부 (해양경찰청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 · 수난구조 협력기관과 수난 구조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조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·통제 · 수난구조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 <p>광역구조본부 (지방해양경찰청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조 협력기관과 수난 구조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조활동의 역할 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·통제 · 관할 해역의 수난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타국 구조조정센터(RCC) 간 국제적인 협력 등 <p>지역구조본부 (해양경찰서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할 해역 내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수색구조체력의 효율적 운영 · 해상에서 수난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대 편성 및 운영 · 해상 응급환자 처치 및 의료기관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대 편성·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등 비상대책기구 역할 및 임무 명시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11 ~34	<p><신설>개정></p>	<p>4 위기관리기구의 대응체계</p> <p>가. 중앙체단안전대책본부</p> <p>1) 구성</p> <p>※ 세부단위 위기형태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</p>	<p>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</p>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35	<p>마. 교육부 대응체계</p> <p>※ 감염병 재난상황에 따라 대책반 구성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</p> <p>※ 부서별 역할은 34페이지(다. 부서별 임무 및 역할) 참조</p>	<p>5 교육부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</p> <p>가. 교육부 대응체계</p> <p>※ 감염병 재난상황에 따라 대책반 구성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</p>	<p>○ 교육부 직제 변경에 따른 부서명 변경</p>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간지 양식 변경
38	<p>1. 목표 < 신설 ></p> <p>가.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종식 유도</p> <p>나.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·경제적 피해를 최소화</p> <p>다. 위기경보 단계별로 언론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하여 대국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 도모</p>	<p>1. 목표 감염병 재난의 예방·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, 재난 발생 시 초기 응급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해 피해 최소화</p> <p>가.~다. 좌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목표 명시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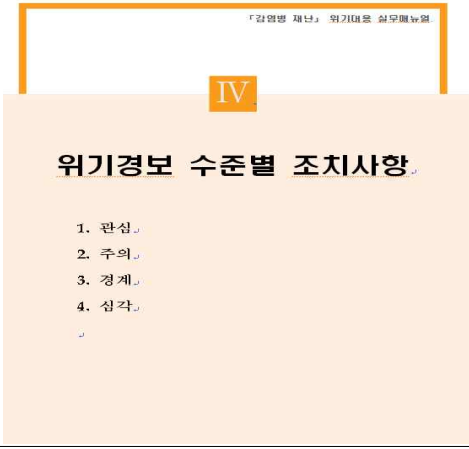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41	<p>나.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</p> <p>(1) 근거 : 「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」 제20조(징후감시체계 운용)</p> <p>-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, 위기징후 활동상태를 지속 감시하고, 징후포착 시 징후정보 수집활동 강화</p> <p>(2) 감시체계 및 운용</p>  <p>- 질병관리청은 위기징후의 활동상태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시·평가하고, 필요시 관련기관에 전파</p> <p>- 질병관리청은 위기징후 감시 결과를 통해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,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관단회의(자체 위기평가회의)를 소집</p> <p>- 위기징후 감시 결과는 필요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DMS)를 통해 공유·전파하거나 필요시 홈페이지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림</p> <p>- 교육부는 보건당국의 위기징후 감시·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기관(교육청·대학·소속기관)에 전파</p> <p>-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교육부는 시·도교육청을 통해 발생 사실을 접수, 본부에 전달하고 유관부처와 상황 공유</p>	<p>나.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</p> <p>1) 근거 : 「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」 제20조(징후감시체계 운용)</p> <p>2) 감시체계 및 운용</p>  <p>가) 보건복지부(질병관리청 포함, 이하 “보건복지부등”)는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위기형태에 따른 감염병 재난의 위기징후를 위기징후 목록별 감시단을 통해 상시 감시</p> <p>나) 보건복지부등은 감염병 재난의 위기징후 감시 평가결과를 매주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가안보실·대통령비서실에 제출</p> <p>· 재난관리업무포털(NDMS)에서 위기징후 감시 평가결과 등을 등록하고, 위기 경보 발령·조청 시에는 즉시 등록</p> <p>라) 보건복지부등은 감염병 재난 관련 기관·부서의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를 종합 관리</p> <p>마) 교육부는 보건당국의 위기징후 감시·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기관(교육청·대학·소속기관)에 전파</p> <p>바)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교육부는 시·도교육청을 통해 발생 사실을 접수, 본부에 전달하고 유관부처와 상황 공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재난주관기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에서도 감시 활동하도록 명시 - 위기징후 포착 시 분석·평가하고, 관리현황을 행안부 공유하여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에 제공하도록 명시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						
42	<신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기경후 감시와 평가, 경보 과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기경후 감시제 운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행정안전부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보건복지부등 (재난관리주관기관)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유관기관 실무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징후목록작성 지침 운용 - 목록 종합 관리 ○ 징후감시활동 방향 제시 - 중점감시 대상, 감시방법 등 ○ 징후감시결과 보고, 진파 - 재난 상황관리 등에 활용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 text-align: center;"> <p>→ 지침 방향 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경후 목록 작성 및 관리 - 새로운 징후목록 발굴, 징후목록 최신성 유지 ○ 위기경후 감시 - 특이징후 집중 감시 - 주기적 위기경후 분석 - 평가 결과 제출 <p>← 감시 결과 목록 제출</p> <p><small>*재난관리업무포털(NIMS)에서 위기경후 감시평가 결과 등을 입력제출</small></p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경후 감시 ○ 위기징후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 관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← 징후 정보 상호 교류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mall>※ 심각 경보 발령 전 후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비서실과 사전 협의</small></p>	행정안전부	보건복지부등 (재난관리주관기관)	유관기관 실무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징후목록작성 지침 운용 - 목록 종합 관리 ○ 징후감시활동 방향 제시 - 중점감시 대상, 감시방법 등 ○ 징후감시결과 보고, 진파 - 재난 상황관리 등에 활용 	<p>→ 지침 방향 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경후 목록 작성 및 관리 - 새로운 징후목록 발굴, 징후목록 최신성 유지 ○ 위기경후 감시 - 특이징후 집중 감시 - 주기적 위기경후 분석 - 평가 결과 제출 <p>← 감시 결과 목록 제출</p> <p><small>*재난관리업무포털(NIMS)에서 위기경후 감시평가 결과 등을 입력제출</small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경후 감시 ○ 위기징후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 관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← 징후 정보 상호 교류</p>	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
행정안전부	보건복지부등 (재난관리주관기관)	유관기관 실무기관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징후목록작성 지침 운용 - 목록 종합 관리 ○ 징후감시활동 방향 제시 - 중점감시 대상, 감시방법 등 ○ 징후감시결과 보고, 진파 - 재난 상황관리 등에 활용 	<p>→ 지침 방향 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경후 목록 작성 및 관리 - 새로운 징후목록 발굴, 징후목록 최신성 유지 ○ 위기경후 감시 - 특이징후 집중 감시 - 주기적 위기경후 분석 - 평가 결과 제출 <p>← 감시 결과 목록 제출</p> <p><small>*재난관리업무포털(NIMS)에서 위기경후 감시평가 결과 등을 입력제출</small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경후 감시 ○ 위기징후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 관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← 징후 정보 상호 교류</p>							
43	<p>나.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 시행</p> <p>(1) 목적 : 위기 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 수준,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위기경보 발령</p>	<p>나. 위기 평가 회의 개요</p> <p>1) 목적: 수집된 위기징후 정보를 종합하여 위기수준을 평가하고, 위기경보발령·변경 및 해제, 비상근무 체계 가동 여부, 사고 수습 대응책 등 논의</p>	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위기 평가 목적 명확화						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43	(2) 시기 :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인한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	<p>2) 시기: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 위기징후 포착 또는 위기발생 예방 시, 자체위기평가회의(상황판단회의)를 개최 운영</p> <p>※ 위기경보 발령 동안 주기적(90일)으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재평가하고 위기경보 단계의 유지 또는 조정여부를 결정</p>	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감염병 재난 위기 평가 회의 개최 시기 명확화 ○ 위기경보 발령 기간동안 회의 정례화 관련 신설
43	<p>(3) 참석자 : 질병관리청 차장(의장), 위기대응분석관, 감염병위기대응국장 등 질병관리청 관련 국장, 위기분석담당관, 위기대응총괄과장 등 감염병별 관련 부서장,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및 관련 전문가</p> <p>※ 필요시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자(의사협회, 병원협회, 간호협회 등) 추가 소집 등 참석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</p> <p>※ 다만, 위기경보 「심각」 단계에서 하향 시, 의장을 '질병관리청장'으로 하고, 관계부처(국무조정실,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등) 및 관련 민간전문가 5인 이상(의학(감염, 응급, 예방, 중환자, 소아 등), 사회 및 경제 등 관련 전문가) 필수 참석</p>	<p>3) 참석자: 질병관리청 청장(의장), 질병관리청 차장, ~~~~~</p> <p>※ 좌동</p> <p>※ 의장 회의 참석 불가 시, 의장이 유선으로 지명하거나 미리 지명한 자가 회의 주제</p> <p>※ 다만, 위기경보 「심각」 단계에서 하향 시, 관계부처(국무조정실,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등) 및 관련 민간전문가 5인 이상의학(감염, 응급, 예방, 중환자, 소아 등), 사회 및 경제 등 관련 전문가 필수 참석</p>	○ 위기평가회의 의장 청장으로 변경 ○ 의장(청장) 참석 불가 시 회의 주제 관련 신설 ○ 의장 변경에 따라 일부 문구 삭제
44	<p>(4)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소집)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 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회의 참석 대상자에 유·무선 통화 또는 영상 등으로 회의 소집 - (장소)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또는 신속한 개최 가능 장소 - (합동 회의) 대통령비서실,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합동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며 영상회의로 개최 가능 <p>* 단, 재난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지정된 기관도 회의 참여 가능</p>	<p>4)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소집)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~~~~~ - (장소) ~~~~~ 상황판단실 ~~~~~ - (합동회의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평가회의 개최(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영상회의로 개최) <p>① 재난관리주관기관(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)에서 재난의 규모 및 대응 단계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위기평가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○ 위기평가회의 의장 청장으로 변경에 따른 소집 권한 변경 ○ 상황판단회의 장소 명확화 ○ 합동회의 개최하는 조건 명확화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46	<p>(2) 경보 발령 절차</p> <p>- 위기발생 예상 →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 소집 및 시행 → 경보 발령</p> <p>-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</p> <p>-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(국가위기관리센터), 대통령비서실(국정상황실, 보건복지비서관실), 행정안전부(감염병재난대응과, 중앙재난안전상황실)에 보고 하고,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</p> <p>※ <u>관심·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발령·전파, 경계·심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령·전파</u>하되, 필요 시 두 기관이 협의하여 한 곳에서 대표로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- 범정부 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“심각” 수준의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. 다만, 위급한 상황일 경우 선 조치 후 지체없이 협의에 착수하여야 함</p> <p>- 위기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 등 대외 홍보활동은 공식적인 창구를 지정·운영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</p> <p>< 신설 ></p>	<p>(2) 경보 발령 절차</p> <p>- 위기발생 또는 예상, 상황판단회의(자체위기평가회의) 개최, 경보 발령 순으로 진행</p> <p>- ~~~~~</p> <p>- ~~~~~</p> <p>~~~~~ , 행정안전부,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</p> <p>※ <u>관심·주의·경계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발령·전파, 심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령·전파</u>하되, ~~~~~</p> <p>- ~~~~~</p> <p>- ~~~~~</p> <p>- ~~~~~</p> <p>-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단계의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</p> <p>·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·운영해야 한다.</p> <p>①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②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·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③ 소관 재난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·운영되는 경우</p>	<p>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</p> <p>- 특수문자 삭제</p> <p>- 행안부 직제 변경 반영</p> <p>- 탄력적인 중수본 운영 및 예외사항 명시</p>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9	<p>라.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위기경보 단계</th> <th colspan="2">대응 체계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① 관심</td> <td>중앙</td> <td>지자체</td> </tr> <tr> <td>감염병별 대책반 (질병관리청)</td> <td>지역 방역대책반 (발생 지자체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② 주의</td> <td>중앙사고수습본부 (중앙방역대책본부) (질병관리청)</td> <td>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시도, 발생시도의 모든 시군구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③ 경계</td> <td>중앙사고수습본부 (중앙방역대책본부) (질병관리청)</td> <td>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발생 지자체) 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지자체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④ 심각</td> <td>중앙사고수습본부 (중앙방역대책본부) (질병관리청)</td> <td>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) 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지자체)</td> </tr> </table>	위기경보 단계	대응 체계		① 관심	중앙	지자체	감염병별 대책반 (질병관리청)	지역 방역대책반 (발생 지자체)	② 주의	중앙사고수습본부 (중앙방역대책본부) (질병관리청)	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시도, 발생시도의 모든 시군구)	③ 경계	중앙사고수습본부 (중앙방역대책본부) (질병관리청)	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발생 지자체) 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지자체)	④ 심각	중앙사고수습본부 (중앙방역대책본부) (질병관리청)	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) 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지자체)	<p>라.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위기경보 단계</th> <th colspan="2">대응 체계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① 관심</td> <td>중앙</td> <td>지자체</td> </tr> <tr> <td>감염병별 대책반 (질병관리청)</td> <td>지역 방역대책반 (발생 지자체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② 주의</td> <td>중앙방역대책본부 (질병관리청)</td> <td>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시도, 발생시도의 모든 시군구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③ 경계</td> <td>중앙방역대책본부 (질병관리청) · 중수본 대응본부</td> <td>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발생 지자체) 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지자체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④ 심각</td> <td>중앙방역대책본부 (질병관리청) · 중수본 대응본부</td> <td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(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) 중앙사고수습본부 (보건복지부)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행정안전부)</td> </tr> </table>	위기경보 단계	대응 체계		① 관심	중앙	지자체	감염병별 대책반 (질병관리청)	지역 방역대책반 (발생 지자체)	② 주의	중앙방역대책본부 (질병관리청)	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시도, 발생시도의 모든 시군구)	③ 경계	중앙방역대책본부 (질병관리청) · 중수본 대응본부	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발생 지자체) 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지자체)	④ 심각	중앙방역대책본부 (질병관리청) · 중수본 대응본부	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(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) 중앙사고수습본부 (보건복지부)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행정안전부)	<p>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</p> <p>- 비상대책기구 운영 체계 변경 사항 반영</p> <p>(「재난안전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반영)</p>
위기경보 단계	대응 체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관심	중앙	지자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감염병별 대책반 (질병관리청)	지역 방역대책반 (발생 지자체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주의	중앙사고수습본부 (중앙방역대책본부) (질병관리청)	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시도, 발생시도의 모든 시군구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경계	중앙사고수습본부 (중앙방역대책본부) (질병관리청)	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발생 지자체) 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지자체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심각		중앙사고수습본부 (중앙방역대책본부) (질병관리청)	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) 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지자체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기경보 단계	대응 체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관심	중앙	지자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감염병별 대책반 (질병관리청)	지역 방역대책반 (발생 지자체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주의	중앙방역대책본부 (질병관리청)	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시도, 발생시도의 모든 시군구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경계	중앙방역대책본부 (질병관리청) · 중수본 대응본부	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발생 지자체) 지역 방역대책반 (전국 지자체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심각		중앙방역대책본부 (질병관리청) · 중수본 대응본부	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(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) 중앙사고수습본부 (보건복지부)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(행정안전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간지 양식 변경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6	<p>4. 감염병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처</th> <th colspan="2">주요</th> </tr> <tr> <th>[관심]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단계</th> <th>[주의] 중앙사고수습본부(중앙방역대책본부) 운영 단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보건복지부 · 질병관리청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· 대응지원 보완 및 불요인력 교육·훈련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앙사고수습본부(중앙방역대책본부, 운영관리실)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지속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·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(시설, 장비, 인력) · 유관기관 상호협력, 조정 체계 운영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처	주요		[관심]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단계	[주의] 중앙사고수습본부(중앙방역대책본부) 운영 단계	보건복지부 · 질병관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· 대응지원 보완 및 불요인력 교육·훈련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앙사고수습본부(중앙방역대책본부, 운영관리실)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지속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·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(시설, 장비, 인력) · 유관기관 상호협력, 조정 체계 운영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	<p>4. 유관기관 주요기능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처</th> <th colspan="2">주요</th> </tr> <tr> <th>[관심]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단계</th> <th>[주의]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단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보건복지부 · 질병관리청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· 대응지원 보완 및 불요인력 교육·훈련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앙방역(대책본부)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지속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(시설, 장비, 인력) · 유관기관 상호협력, 조정 체계 운영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처	주요		[관심]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단계	[주의]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단계	보건복지부 · 질병관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· 대응지원 보완 및 불요인력 교육·훈련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앙방역(대책본부)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지속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(시설, 장비, 인력) · 유관기관 상호협력, 조정 체계 운영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상대책기구 운영 체계 변경 사항 반영 (「재난안전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반영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처	주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[관심]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단계	[주의] 중앙사고수습본부(중앙방역대책본부) 운영 단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건복지부 · 질병관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· 대응지원 보완 및 불요인력 교육·훈련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앙사고수습본부(중앙방역대책본부, 운영관리실)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지속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·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(시설, 장비, 인력) · 유관기관 상호협력, 조정 체계 운영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처	주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[관심]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단계	[주의]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단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건복지부 · 질병관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· 대응지원 보완 및 불요인력 교육·훈련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앙방역(대책본부) 운영 · 위기경중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 ·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지속 ·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·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(시설, 장비, 인력) · 유관기관 상호협력, 조정 체계 운영 ·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8	<p>5. 비상연락망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복지부·질병관리청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주관기관(부서)</th> <th>직위</th> <th>연락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공보건정책관</td> <td>국장</td> <td>044-202-2500</td> </tr> <tr> <td>질병정책과</td> <td>과장</td> <td>044-202-2510</td> </tr> <tr> <td>질병정책과</td> <td>사무관</td> <td>044-202-2505</td> </tr> <tr> <td>질병정책과</td> <td>주무관</td> <td>044-202-2506</td> </tr> <tr> <td>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총괄과</td> <td>국장</td> <td>043-719-9000</td> </tr> <tr> <td>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</td> <td>과장</td> <td>043-719-9050</td> </tr> <tr> <td>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</td> <td>사무관(연구관)</td> <td>043-719-9081</td> </tr> <tr> <td>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</td> <td>주무관</td> <td>043-719-9082</td> </tr> <tr> <td>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</td> <td></td> <td>043-719-7789, 779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주관기관(부서)	직위	연락처	공공보건정책관	국장	044-202-2500	질병정책과	과장	044-202-2510	질병정책과	사무관	044-202-2505	질병정책과	주무관	044-202-2506	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총괄과	국장	043-719-9000	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	과장	043-719-9050	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	사무관(연구관)	043-719-9081	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	주무관	043-719-9082	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		043-719-7789, 7790	<p>5. 비상연락망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복지부·질병관리청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명</th> <th rowspan="2">부서명</th> <th colspan="2">연락처</th> </tr> <tr> <th>전화</th> <th>Fax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보건복지부</td> <td>공공보건정책관</td> <td>044-202-2500</td> <td>044-202-3928</td> </tr> <tr> <td>질병정책과</td> <td>044-202-2510, 2505, 2506</td> <td>044-202-3928</td> </tr> <tr> <td>비상안전기획관실</td> <td>044-202-2652</td> <td>044-202-3922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질병관리청</td> <td>감염병위기관리국</td> <td>043-719-9000</td> <td>043-719-9099</td> </tr> <tr> <td>위기관리총괄과</td> <td>043-719-9050, 9081, 9082</td> <td>043-719-9099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종합상황실</td> <td>043-719-7979</td> <td>043-719-945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명	부서명	연락처		전화	Fax	보건복지부	공공보건정책관	044-202-2500	044-202-3928	질병정책과	044-202-2510, 2505, 2506	044-202-3928	비상안전기획관실	044-202-2652	044-202-3922	질병관리청	감염병위기관리국	043-719-9000	043-719-9099	위기관리총괄과	043-719-9050, 9081, 9082	043-719-9099		종합상황실	043-719-7979	043-719-945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상연락망 현행화 ○ 질병관리청 직제 변경 반영
주관기관(부서)	직위	연락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보건정책관	국장	044-202-2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질병정책과	과장	044-202-25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질병정책과	사무관	044-202-250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질병정책과	주무관	044-202-250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총괄과	국장	043-719-9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	과장	043-719-90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	사무관(연구관)	043-719-908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	주무관	043-719-908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		043-719-7789, 77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명	부서명	연락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전화	Fax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건복지부	공공보건정책관	044-202-2500	044-202-392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질병정책과	044-202-2510, 2505, 2506	044-202-392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상안전기획관실	044-202-2652	044-202-392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질병관리청	감염병위기관리국	043-719-9000	043-719-909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기관리총괄과	043-719-9050, 9081, 9082	043-719-909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종합상황실	043-719-7979	043-719-945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쪽수	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질병청 표준매뉴얼 반영 - 간지 양식 변경